



고리채에서 해방을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금년에도 경기회복 전망이 밝지 만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양축을 하는 우리들로서는 안타깝기 그지 없다.

생산을 줄여도 생산물이 남아도니 말이다. 70년대에 좋았던 부동산 투기도 잠잠하고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유동성자금들이 은행금리가 계속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3월 23일부총리는 앞으로 금리를 년 12% 까지 하향조정하고 환율도 현실화할 뜻을 발표 함으로써 월(月) 1% 금리시대가 다가온 느낌이다.

년초부터 우리에게 익숙해진 새로운 단어가 “물가의 한자리숫자 인상”이라는 것으로 전국이래 금년에 처음으로 물가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고 한다.

물가하면 계란과 닭고기 값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물가안정에 그동안 너무 큰 공헌을 하여왔기 때문이다.

불과 5년전만 하여도 계란 1개로 연탄 1개를 살 수 있었고, 계란 1개값이 시내버스 요금과 같았는데 이제는 3개를 가져야 되게 되었다.

환율의 인상은 후반기 사료곡물 가격이 상승 될경우 우리에게 생산비의 상승 압박을 가중 할 것이고, 한번 경영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배합사료의 가격 차율화 이후에, 이 제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이제는 현금거래와 외상거래의 가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대개 현금 거래의 경우는 외상거래보다 3~4% 값이 싸게 거래된다. 심한 경우는 (사료공장에서 현찰이 급히 필요할 경우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회사의 경우) 그 이상도 싸게 해준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이는 현금거래하는 농장에 비하여 외상 거래의 경우는 년 50% ($4\% \times 12$ 개월)의 고리(高利) 사채로 양계를 하는 것이 된다.

외상거래를 2년만하면 금리가 100%로 경영비가 이자로 다 날라가 버리는 결과가 되며 이를 복리로 계산하면 양계장이 이자에 잠식 당하는 풀이 될 수도 있다.

양계산업이 농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년 50%의 금리를 부담하고 견디어 낼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어느 산업도 이렇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견디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70년대의 인플레이션의 환상 속에서 살고 있거나 않은지 반성해 볼 시기가 왔다고 본다.

사료는 외상으로, 계란판매는 현금으로 현금의 신규농장 확장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따라 양계의 수입의 증가로 이어져 오던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다.

이제 서서히 양계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료가 외상으로 거래되는 현실에서 양계업자들은 금리부담에서 헤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러 대책이 요망된다.

양계사료의 주가 되는 옥수수를 금리가 높은 미국 시중은행·자금을 사용하는 CCC GSM 102로 구입하기 때문에 구매방법의 개선없이는 높은 금리를 양축가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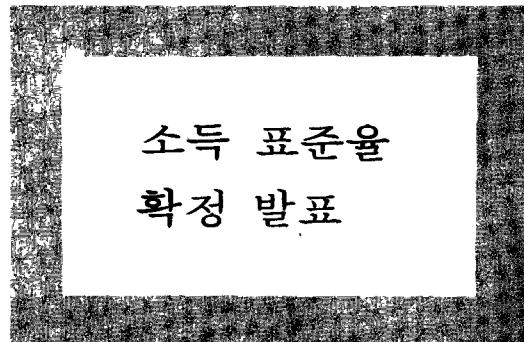
이제 GSM 102를 사용하는 나라가 한국과 경제파산의 지경에 이른 폴란드 정도라는 미사료곡물협회 스톤티회장의 말은 우리에게 옥수수 구매방법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로 생각되어진다.

이제 시중대출금리가 12%수준 이하로 내려 가고 환율이 인상조정되면 양축업계도 외국차관 보다는 국내자금을 이용하여야 되겠고 더 좋은 것은 축산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

법이라 하겠다.

계란값과 닭고기값이 약간 상승한다 해도 고리채를 쓰는 동안 산업의 전전한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양계산업이 생산성 향상 보다는 자금 경쟁으로 변할 때를 생각해 보자.



81년도 사업분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확정 발표되었다.

80년도분과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양계업은 외형 1억 이상인 경우는 11%, 1억 이하에는 10%로 확정 되었고 부화업은 1억 이상은 13.7%, 1억이하는 12.5%로 적용 받는다

소득표준율을 제2의 세율이라 할만큼 세액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아는 바이다.

소득표준율은 소득세 및 법인세 추계(推計) 결정시에 적용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신고 권장용으로 소득표준율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장을 잘하면 소득표준율과는 상관이 없게된다.

몇해 전만 해도 소득표준율에 큰 관심을 표시하던 우리업계도 최근에는 세무사들의 협조를 받아 장부조직을 하고 기장들을 철저히 하는 농가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소득표준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81년 차등율(낮은율) 적용 조건표

대상자	적용율	적용 범위	적용 대상 금액	제외자	적용상의 특례
금전등록기 설치 사용자	90%	금전등록기 설치 사용자	① 부가세액 공제 받은 금액 ② 부가세 면세업자는 확인금액	① 부가세 개정(更正) 결정자 ② 가격위반자 ③ 계산서 단속에 의거 통고처분 받은자 ④ 세무사찰결과 탈루자료가 적발된 자 ④ 무자료 및 위장자료거래 적발된자	
성실신고 회원 조합 및 납세조합가입자	90%	① 성실한 신고조합원 ② 납세조합원	① 성실신고업종에 한함 ② 가입월부터 원할(月割) 계산	① 낸도중 자격 박탈자 및 조합 탈퇴자 ②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자 ③ 가격위반자 ④ 통고처분 받은자 ⑤ 세무사찰 결과 탈루자료가 적발된자 ⑥ 무자료 및 위장자료거래 적발된자	① 금전등록기 설치 사용자 ② 성실신고회원 조합 및 납세조합가입자 ③ 외화회득사업자로서 2개 이상의 낮은율에 해당될 때는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함
외화회득사업자	90%	소득세법 시행령 제 69조 제 1항, 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 17조 1항, 2항의 외화회득사업영위자	① 외환은행에서 외환증서, 원화 취득 금액 ② 자기명의 신용장 대행수출금액 ③ 비거주자 원화 계정을 통한 수입금액 ④ 관광사업자 등은 주무관청 증명금액	※ 기본율 적용 ① 도매 “수출” ② 관광요정 ④ 홀치기	
타가사업자	90%	판매업, 음식숙박업자 서비스업자			

그러나 아직은 우리여건이 기장을 하는데는 양계산물 판매시 영수증 받기가 어렵다든가 또는 기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 부족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많은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직도 많은 양축가들이 추계과세를 받고 있다.

최근에 일부 본협회 본회에서 양계업의 불황에 따라 합법적인 절세방법등이 많이 연구

되고 있는데 예를들면 납세조합 등을 조직하여 낮은율을 적용받는 방법 등이다.

참고로 낮은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해당되면 소득표준율의 10%가 공제된 90%만 적용받게 된다.

81년도에는 축산업도 2원화 업종에 포함되어 외형 1억이상과 1억미만으로 구분되어 2원화 되었다.

81년도 소득표준율

종 목	구 分	적용구분	기 본 율				비 고
			78년	79년	80년	81년	
낙농 및 육우사육		1억원미만				8	
		1억원이상	10	9	9	8.8	
양 돈		1억원미만*				10	
		1억원이상	14	10	10	11	
양 봉		1억원미만				18	
		1억원이상	18	18	18	19.8	
기타 가축 및 가금사육	양 계	1억원미만				10	
		1억원이상	12.5	11	11	11	
(기타 가축 및 가금 사육)	(기 타)	기 타				12.5	
		"				13.7	
						(12.5)	축산법에 의하여 허가된 일자가 영위하는 가금 부 화업
						(13.7)	

제조업

종 목	구 分	적용구분	기 본 율				비 고
			78년	79년	89년	81년	
낙농품, 고기 가공 및 저장	연 유	6천만원			8.5	8.5	
		6천만원이상	8.5	8.5	9.3	9.3	
	분 유	6천만원미만			6	6	
		6천만원이상			6.6	6.6	
	기 타	6천만원미만			12	12	
		6천만원이상	12	12	13.2	13.2	
배합사료		6천만원미만	4.5	4.5	4.5	4.4	
		6천만원이상			4.9	4.9	

도매업

종 목	구 分	적용구분	기 본 율				비 고
			78년	79년	80년	81년	
가 측		6천만원미만			3	3	
		6천만원이상	3	3	3.3	3.3	가축 및 가금
고 기	고기부산물	6천만원미만			3.5	3.5	
		6천만원이상	3.5	3.5	3.8		식육부산물
	고 기	6천만원			4		
		6천만원이상	4	4	4.4		소, 돼지, 닭 등의 식육